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-3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4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위임 법령명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건강진단결과서(舊보건증)의 수수료 관련 위임법령인 “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”를 명시함(제1조, 제2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
- 2)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5. 3. 20.~3. 27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 및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수수료”를 “수수료(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가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행정과 정유연
연 락 처	02-3153-9011